

2024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

1 개 요

□ 관련 법령

- 병역법 제58조제2항, 시행령 제119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)

□ 지원 자격

- 병역판정검사, 현역병 입영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,
-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(기초의학 포함)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

△ 선발대상자 연령 * 연령계산방법 : 현재연도 - 출생 연도

- 의사 : 28세 이하(1996. 1. 1.이후 출생자)

* 다만, 레지던트 3년과정 희망자는 29세 이하자(95년이후 출생자) 가능

- 치과의사·한의사 : 29세 이하(1995. 1. 1.이후 출생자)

- 인턴과정 없이 운영되는 레지던트 전문과목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

※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

- 장교 임용결격 : 금고 이상의 형, 파산선고자, 복수국적자 등

□ 선발 일정

- 의무사관후보생¹⁾ 지원서 접수(지원자 → 수련기관의 장 → 병무청장)

△ 지원서 전산 접수(이음포탈) : '24. 1.25.(목) ~ 2.10.(토)

- 지원서류 대조·보완, 신원조회 : '24. 2.19.(월) ~ 4.19.(금)

-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: '24. 5. 1.(수)

1)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기간 동안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(전산추첨)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편입되는 제도

□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

○ 제출서류

- △ ① 현역 · 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, ② 신원진술서(A), ③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(A), ④ 기본증명서(상세), ⑤ 신용정보조회서
- ④ 기본증명서(상세)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
또는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- ⑤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
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- ※ ①,②,③ 서식 및 지원 안내문은 홈페이지(병무소식→공지사항) 참고(24. 1. 10. 게시)
(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 · 치과의사 ·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)

○ 작성 시 유의 사항

- △ 현역 ·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
 - 지원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체크, 서명 날인 필수(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도 서명 필수)
- △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(A)
 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- △ 의무사관후보생(의과) 전공의 수련 동의서 * 서식 붙임4 동의서 참고
 - 의과 지원자 중 29세(1995년생)만 작성 : 치과 · 한의과 해당없음
- 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(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)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○ 기타 안내사항

- △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 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사항」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반드시 안내

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

○ 의무사관후보생 포기·취소 가능 여부

-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*되면, 「병역법시행령」 제120조에 따라
의무사관후보생 취소·포기 불가 * 병적편입 : '24. 5. 1.

○ 제한연령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및 수련기관 퇴직(레지던트 미승급 포함)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
-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

○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

- 과정 수료자, 수련 중단자,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장교(군의원),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

○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

-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,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

○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

-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

2024. . .

병 무 청 장